

의안번호	2207530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5.7.8.
추 계 번호	25B02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안 제37조의2제4항¹⁾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우선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환수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Ⅰ)과 추가재정소요(Ⅱ)로 구분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Ⅰ)과 추가재정소요(Ⅱ)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각각을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
 - 시나리오1: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 시나리오2: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10% 증가
 - 시나리오3: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16.9%²⁾) 수준으로 증가
 -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고려한 추가재정소요(추가재정소요(Ⅰ))는 2026년에 3,014~4,198억원, 2030년에 3,397~4,73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6,011억원~2조 2,299억원(연평균 3,202억원~4,460억원)으로 추계됨
 -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추가재정소요(Ⅱ))는 2026년에 986~1,827억원, 2030년에 1,111~2,05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239억원~9,704억원(연평균 1,048억원~1,941억원)으로 추계됨

1) 안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2)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고려하는 경우							
시나리오1	3,014	3,105	3,199	3,296	3,397	16,011	3,202
시나리오2	3,714	3,826	3,942	4,061	4,185	19,728	3,946
시나리오3	4,198	4,325	4,455	4,590	4,731	22,299	4,460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고려하는 경우							
시나리오1	986	1,016	1,047	1,078	1,111	5,239	1,048
시나리오2	1,483	1,528	1,574	1,622	1,671	7,878	1,576
시나리오3	1,827	1,882	1,939	1,997	2,059	9,704	1,941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을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가재정소요는 산재신청 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별(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1항)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u>유지</u> 및 <u>통계 작성</u> ·공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의 공시) 신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제1항) 1.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2.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3. 보험급여 결정사항 4.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5.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된 정보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u>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u> 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u>증명이 있다고 봄.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u> 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4	안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신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 업무상 질병조사(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됨(제3항)	의무규정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공단은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5항)	재량의무규정
		그 밖에 질병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5	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항 신설)	의무·재량규정
		회의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및 보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6	안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신설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함(제1항)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3. 제116조제5항과 제6항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의무규정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기간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함(제6항 신설)	의무규정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	• 미대상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조항은 공단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의 공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4	안 제37조의2(업무상 질병 조사의 실시)	—	• 미대상 － 현행 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기간,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³⁾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 업무상 질병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질병조사 기간 및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 실시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조사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규를 보면 역학조사의 기한을 180일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규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조사의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 미대상 - 개정안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	• 공식추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 본문 참조
7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 미대상 -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⁵⁾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5.4 기준)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2.9	3.2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①재해조사 기간⁶⁾을 초과한 경우와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또는 ③의사 등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⁷⁾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대상 중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는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함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우선 지급 대상의 인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대상자의 수 및 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에 본 추계서는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 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해야하는 대상 중 ③의사 등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검토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

6) 안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7) 안 제116조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함⁹⁾
- 개정안은 의사 등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의사 등의 신고 건수와 신고에도 불구하고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검토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간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사 등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 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재해조사 기간 초과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증가분임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선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금의 환수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Ⅰ)과 추가재정소요(Ⅱ)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¹⁰⁾ 및 휴업급여¹¹⁾에 한하여 산출

8)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9)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10)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생략>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25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코드: 7084-104), 기관운
영경비(코드: 7084-204), 청사임차비(코드: 7084-206)를 지원받고 있으며, 개정
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의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역
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질병조사의 경우 60일,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의 경우 180일을 초과한 경우임
- 최근 5년간 우선 지급 대상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10,172	10,128	13,194	14,344	19,163
	휴업급여	7,398	7,162	8,354	8,294	9,647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323	329	283	230	227
	휴업급여	137	183	163	131	138

주: 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및 승인일자 기준

2. 휴업급여: 2025.4.8.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신청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3]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승인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건수	승인	승인률	불승인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	33,552	19,163	57.1%	14,389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	431	227	52.7%	204

주: 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및 승인일자 기준

2. 휴업급여: 2025.4.8.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 휴업급여의 신청건수는 2023년 기준 수급자 수에 요양급여의 승인률을 적
용하여 산출
- 2023년 기준 우선 지급 대상 수급자 수와 승인률을 토대로 신청건수를 추산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음

11)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
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 휴업급여 신청건수는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수급자 수(9,647건)에 해당 연도의 요양급여 승인률(57.1%)을 적용하여 산출

※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 휴업급여 신청건수는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수급자 수(138건)에 해당 연도의 요양급여 승인률(52.7%)을 적용하여 산출

[표 4]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건수(추정치)

(단위: 건)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60일을 초과한 경우	33,552	16,891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	431	262
합계	33,983	17,15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가. 총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신청건수에 지급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¹²⁾

- (신청건수) 산업재해는 ‘재해’라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도의 도입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급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
 - － 시나리오1: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 － 시나리오2: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10% 증가
 - － 시나리오3: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16.9%¹³⁾) 수준으로 증가
 - － 본 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12)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우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은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선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산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가 법안비용추계서상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13)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표 5]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1	요양급여(60)	33,552	33,552	33,552	33,552	33,552
	요양급여(180)	431	431	431	431	431
	휴업급여(60)	16,891	16,891	16,891	16,891	16,891
	휴업급여(180)	262	262	262	262	262
시나리오2	요양급여(60)	36,907	36,907	36,907	36,907	36,907
	요양급여(180)	474	474	474	474	474
	휴업급여(60)	18,580	18,580	18,580	18,580	18,580
	휴업급여(180)	288	288	288	288	288
시나리오3	요양급여(60)	39,228	39,228	39,228	39,228	39,228
	요양급여(180)	504	504	504	504	504
	휴업급여(60)	19,748	19,748	19,748	19,748	19,748
	휴업급여(180)	306	306	306	306	306

주: 1. 요양급여(60) 및 휴업급여(6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일수) 2023년 기준 지급일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평균 지급일수

(단위: 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양급여(60)	180.4	171.0	187.1	208.7	252.4
휴업급여(60)	353.8	357.6	354.4	328.5	305.5
요양급여(180)	476.3	510.0	586.4	663.3	788.5
휴업급여(180)	1099.2	898.6	970.6	932.2	935.9

주: 1. 요양급여(60) 및 휴업급여(6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및 승인일자 기준

4. 휴업급여: 2025.4.8.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단가) 2023년 기준 일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산출하며,

-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수가인상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7]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양급여	29,500	29,970	28,280	27,960	31,570
휴업급여	58,940	59,850	62,600	64,840	67,950

자료: 고용노동부

- (요양급여)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지원단가에 2025년 수가인상률(1.96%¹⁴⁾)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5년 기준 수가인상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휴업급여)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지원단가(67,950원)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8] 산재보험급여 지급단가(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요양급여	33,463	34,119	34,788	35,469	36,165
휴업급여	74,937	77,771	80,700	83,743	86,96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에 지원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정안은 우선 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총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1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2024.6.1.

[표 9]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의 경우 60일,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총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요양급여(60)	2,834	2,889	2,946	3,004	3,063	—	—
	요양급여(180)	114	116	118	121	123	—	—
	휴업급여(60)	3,867	4,013	4,164	4,321	4,487	—	—
	휴업급여(180)	184	191	198	205	213	—	—
	소계	6,998	7,209	7,426	7,651	7,886	37,170	7,434
시나리오2	요양급여(60)	3,117	3,178	3,241	3,304	3,369	—	—
	요양급여(180)	125	128	130	133	135	—	—
	휴업급여(60)	4,254	4,414	4,581	4,753	4,936	—	—
	휴업급여(180)	202	210	218	226	235	—	—
	소계	7,698	7,930	8,169	8,416	8,675	40,887	8,177
시나리오3	요양급여(60)	3,313	3,378	3,444	3,512	3,581	—	—
	요양급여(180)	133	136	138	141	144	—	—
	휴업급여(60)	4,521	4,692	4,869	5,052	5,246	—	—
	휴업급여(180)	215	223	231	240	249	—	—
	소계	8,182	8,429	8,683	8,945	9,220	43,458	8,692

주: 1. 요양급여(60) 및 휴업급여(6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가재정소요(I)

□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이후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분은 현행법에 따라 산재 인정 결정 후 지급될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이때, 기준선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보험급여로, 2023년 기준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토대로 추계

[표 10] 기준선(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일,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급건수(A)	요양급여(60)	19,163	19,163	19,163	19,163	19,163
	요양급여(180)	227	227	227	227	227
	휴업급여(60)	9,647	9,647	9,647	9,647	9,647
	휴업급여(180)	138	138	138	138	138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급일수(B)	요양급여(60)	252	252	252	252	252
	요양급여(180)	789	789	789	789	789
	휴업급여(60)	306	306	306	306	306
	휴업급여(180)	936	936	936	936	936
지급단가(C)	요양급여	0.03	0.03	0.03	0.04	0.04
	휴업급여	0.07	0.08	0.08	0.08	0.09
재정소요 (D=A×B×C, 억원)	요양급여(60)	1,619	1,650	1,683	1,716	1,749
	요양급여(180)	60	61	62	63	65
	휴업급여(60)	2,209	2,292	2,378	2,468	2,563
	휴업급여(180)	97	100	104	108	112
	합계	3,984	4,104	4,227	4,355	4,489

주: 1. 요양급여(60) 및 휴업급여(6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질병조사 중 6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한 질병조사 중 18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재정소요(I)은 총재정소요에서 기준선을 차감하여 산출

－ 이때, 산재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표 11] 기준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고려한 추가재정소요(I)(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총재정소요(A1)	6,998	7,209	7,426	7,651	7,886	37,170	7,434
	기준선(B)	3,984	4,104	4,227	4,355	4,489	21,159	4,232
	추가재정소요(C1=A1-B)	3,014	3,105	3,199	3,296	3,397	16,011	3,202
시나리오 2	총재정소요(A2)	7,698	7,930	8,169	8,416	8,675	40,887	8,177
	추가재정소요(C2=A2-B)	3,714	3,826	3,942	4,061	4,185	19,728	3,946
시나리오 3	총재정소요(A3)	8,182	8,429	8,683	8,945	9,220	43,458	8,692
	추가재정소요(C3=A3-B)	4,198	4,325	4,455	4,590	4,731	22,299	4,460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가재정소요는 산재신청 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별(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다. 추가재정소요(Ⅱ)

- 개정안은 재해조사 기간을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면서, 추후 산업재해 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공단이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추가재정소요(Ⅱ))를 산출
 - － 이 경우 기준선은 추가재정소요(Ⅰ)에서의 기준선(기존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액)에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더하여 산출
 -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승인률을 적용하며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3년 기준 승인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2]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 1	요양급여	요양급여(60)	1,215	1,239	1,263	1,288	1,313
		요양급여(180)	54	55	56	57	58
	휴업급여	휴업급여(60)	1,658	1,721	1,786	1,853	1,924
		휴업급여(180)	87	90	94	97	101
	합계(C1=A1+B1)		3,014	3,105	3,199	3,296	3,397
시나리오 2	요양급여	요양급여(60)	1,337	1,363	1,390	1,417	1,445
		요양급여(180)	59	60	62	63	64
	휴업급여	휴업급여(60)	1,824	1,893	1,964	2,039	2,117
		휴업급여(180)	96	99	103	107	111
	합계(C2=A2+B2)		3,316	3,416	3,519	3,625	3,737
시나리오 3	요양급여	요양급여(60)	1,421	1,449	1,477	1,506	1,536
		요양급여(180)	63	64	65	67	68
	휴업급여	휴업급여(60)	1,939	2,012	2,088	2,167	2,250
		휴업급여(180)	102	106	110	114	118
	합계(C3=A3+B3)		3,524	3,631	3,740	3,853	3,972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은 현행법¹⁵⁾에 따른 환수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3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67.3%)을 준용하여 산출
 - 장래에 발생할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추계기간 동안 2023년 기준 환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환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13]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1)	3,014	3,105	3,199	3,296	3,397	16,011	3,202
	환수액(B1=A1×67.3%)	2,028	2,089	2,152	2,217	2,285	10,773	2,155
시나리오 2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2)	3,316	3,416	3,519	3,625	3,737	17,612	3,522
	환수액(B2=A2×67.3%)	2,231	2,298	2,367	2,439	2,514	11,850	2,370
시나리오 3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3)	3,524	3,631	3,740	3,853	3,972	18,720	3,744
	환수액(B3=A3×67.3%)	2,371	2,443	2,516	2,592	2,672	12,595	2,519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재정소요(Ⅱ)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와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고려한 기준선을 차감하여 산출

[표 14]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고려한 추가재정소요(Ⅱ)(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총재정소요(A1)		6,998	7,209	7,426	7,651	7,886	37,170	7,434
기준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3,984	4,104	4,227	4,355	4,489	21,159	4,23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1)	2,028	2,089	2,152	2,217	2,285	10,773	2,155
	소계(D1=B1+C1)	6,012	6,193	6,380	6,573	6,775	31,932	6,386
추가재정소요(E1=A1-D1)		986	1,016	1,047	1,078	1,111	5,239	1,048

- 15)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2								
총재정소요(A2)		7,698	7,930	8,169	8,416	8,675	40,887	8,177
기 준 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3,984	4,104	4,227	4,355	4,489	21,159	4,23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2)	2,231	2,298	2,367	2,439	2,514	11,850	2,370
	소계(D2=B1+C2)	6,215	6,402	6,595	6,794	7,003	33,009	6,602
추가재정소요(E2=A2-D2)		1,483	1,528	1,574	1,622	1,671	7,878	1,576
시나리오3								
총재정소요(A3)		8,182	8,429	8,683	8,945	9,220	43,458	8,692
기 준 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3,984	4,104	4,227	4,355	4,489	21,159	4,23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3)	2,371	2,443	2,516	2,592	2,672	12,595	2,519
	소계(D3=B1+C3)	6,355	6,547	6,744	6,948	7,161	33,754	6,751
추가재정소요(E3=A3-D3)		1,827	1,882	1,939	1,997	2,059	9,704	1,941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을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가재정소요는 산재신청 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별(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탈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승인을, 회수 및 환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82조의2제1항제1호¹⁶⁾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승인률이 증가할 수 있음
 - －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를 고려할 경우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질병조사 기간 및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 실시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해조사 기간이 단축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

16) 안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